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법 인 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부품의 생산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 산입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매입 미분양 주택의 매입기한을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 소득의 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 추가 등(안 제3조제1항)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나.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안 제19조의2제8호 신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

다.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 및 안 제39조제6항부터 제8항)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의무를 폐지함.

라.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시설 추가 등(안 제39조제1항)

1)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시설 추가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의 10퍼센트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시설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2) 공익법인 등 범위에서 외국 소재 종교단체 제외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소속 종교단체의 범위에서 외국 소재 종교단체를 제외함.

마.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안 제68조제1항)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조건부·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바. 가상자산 평가방식 변경(안 제77조)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

사.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경우 합병대가 및 적격합병 요건 명확화(안 제80조제1항, 제80조의2제3항, 제82조제1항, 제82조의2제6항)

합병대가 산정시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주식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하는 한편, 적격합병 판정을 위해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과 같이 합병법인의 외국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아. CR리츠가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안 제92조의2제2항)

CR리츠가 2026년 12월31일까지 매입하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안 제94조의2제3항·제4항)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변경함.

차.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안 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제외하는 법인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을 추가함.

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 (안 제129조의3제4항 신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타.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안 제133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기준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로 정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파.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규정(안 제138조의4제15항·제16항 및 제17항)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 서류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거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

제19조제13호 중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을 “무료진료권”으로 한다.

제19조의2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으로 한정한다)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제2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취득가액”을 “미상각잔액”으로, “총채굴예정량”을 “잔존채굴예정량(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채굴량을 뺀 나머지 채굴예정량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를 “제1항제2호에”로 한다.

제38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로,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을 “점검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중 “단체”를 “국내 소재 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을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한다.

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제42조제4항제4호 중 “제2조제1항제8호”를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한다.

제7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보험회사는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7조 중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같다”의 주식등(이하)를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등의”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내국법인”을 “법인”으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등”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6조의3제9항 단서 중 “단서”를 “가목”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사업장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경우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제94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

국 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을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을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 후단 중 “법 제75조”를 “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원천징수세율(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frac{A}{B} \times C$$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 및 제7호의”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제1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상생협력”을 각각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한다.

제12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을 “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간주자본 지급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2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중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38조의4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는”을 “자(법 제93조의3 제7항에 따라 법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을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한다.

⑩ 법 제93조의3제6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또는 제13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의미한다.

별표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4조제2항	500만원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④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제3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 이후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미분양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의 적용례)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외국법인의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 하. (생략) 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u>건강가정지원센터</u> <u><신설></u> 5. ~ 16. (생략) ②·③ (생략)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 ----- <u>건강가정지원센터</u> 및 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u>가족센터</u> 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u>활동지원기관</u> 5. ~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손비의 범위) ----- ----- -----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 12. (생략)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u>무료진료권</u> 또는 <u>새마을진료권</u> 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 24. (생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 7. (생략) <u><신설></u>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u>무료진료권</u> ----- ----- -- 13의2. ~ 24.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
--	--

	<u>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u> · <u>부품으로 한정한다</u>)의 생산 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u>채무보증</u>
⑦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 은 다음과 같다.	②-----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 로 하는 상각방법	3. ----- ----- -----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 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 는 광구의 <u>총채굴예정량</u> 으 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 <u>미상</u> <u>각잔액</u> ----- ----- <u>잔존채굴예정량</u> (<u>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u> <u>사업연도까지의 누적채굴</u> <u>량을 뺀 나머지 채굴예정</u> <u>량을 말한다</u>)-----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 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 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③----- <u>제1항제2호에</u> ----- ----- -----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삭 제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u>학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u> <u>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u> <u>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u> (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 부등”이라 한다)를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 면 주무관청이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	<삭 제>

록 요구하여야 한다.

⑩ 주무관청은 제9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생략)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3항 및 제4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⑩ -----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 점검결과를 -----

-----.

⑪ -----

-----.

1. (현행과 같음)
2. -----

----- 사실에 있는 경우

앞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 5. (생략)
⑫ ~ ⑮ (생략)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 라.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

1.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
회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
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생략)

2. (생략)

3. 삭 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마. _____

국내 소재 단체 _____

바.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
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 카. (생략)

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
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

파. (생략)

<신 설>

5. 삭 제

6.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제5항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
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제
1항---

나. ~ 카. (현행과 같음)

타. -----
----- 건강가정지
원센터 및 같은 법 제35조
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파. (현행과 같음)

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면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
록 요구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유치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익
법인등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보
고받은 내용을 점검해야 하며,
그 점검결과 제5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공개 내용
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금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
을 제출할 것을 해당 공익법인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등은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금 지
출 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
출해야 한다.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
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⑦ ----- 제5항에 따른 의
무의 이행 여부를 -----

⑧-----

그 지정의 취소를 재정경제부장
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생략)
2. 공익법인등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 5. (생략)

⑨ ~ ⑯ (생략)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 3. (생략)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 (현행과 같음)

2. -----

---- 사실이 있는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⑨ ~ ⑯ (현행과 같음)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_____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 제2조제1항
제9호-----

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

-----.

1. (현행과 같음)

2. -----

가. -----

--- 법인-----

--- 이 조에서 같다)의 주

식등(이하 이 조에서 ----

-----.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생략)

②·③ (생략)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

-----.

나.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

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

식등(이하 이 조에서 “합병교부

주식등”이라 한다)의 -----

---. -----

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	-----
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	계산) ① -----
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	-----
의 금액으로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	2. -----
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가. -----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	-----
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	-----
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
소유하고 있는 <u>내국법인</u> 의	----- <u>법인</u> -----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u>같</u>	----- <u>이</u>
<u>다</u>)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u>조에서 같다</u> -----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	-----
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	-----

활동기일 전 취득한 분할	-----
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	-----
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	-----
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	-----
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	-----
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	-----
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	-----
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	-----
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	-----
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	-----
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	-----
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	-----
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	-----
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
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	-----
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
주식(이하 “분할합병교부	---- <u>이하 이 조에서</u> -----
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	-----
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	-----
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	-----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	-----

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	-----
다.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⑥ -----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	-----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	-----
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	-----
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u>주식등</u> 의	----- <u>분할신설</u>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u>법인등의 주식(분할등기일 현재</u>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	<u>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u>
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	<u>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u>
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	<u>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u>
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	<u>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분할</u>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u>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u> -----
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	-----
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 -----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	-----
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	-----
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	-----
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	-----

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	-----
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	-----
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
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	-----
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
것으로 본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략)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⑧ 삭제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	⑨ -----
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	-----
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	-----
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	-----
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
실질귀속자(해당 소득과 관련하	-----
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	-----
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	-----
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	-----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	-----

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
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
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무기
간이 종료한 날에 제1호, 제1호
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12에
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1의15. (생략)

1의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신 설>

<신 설>

<신 설>

[illegible]

1. ~ 1의15. (현행과 같음)

1의16. -----

----- 2026년 12
월 31일까지 직접 ----2026년
12월 31일-----

-----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
할 것
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을 것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

2. ~ 4. (생략)

③ ~ ⑨ (생략)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
 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
 격을 뺀 -----

 ③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의국법인 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
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
나 같은 경우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제1호 외의 소득의 경
우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삭 제>

<삭 제>

$$\frac{A}{B} \times C$$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
접투자자의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⑤ 삭 제

⑥ ~ ⑧ (생략)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 (생략)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
55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
우 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 ⑤ (생략)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생략)

②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별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2. (생략)

<신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원천징수세율-----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frac{A}{B} \times C$$

A: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응하는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B: 투자대상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합계액

C: 투자대상별 외국 원천징수세율(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 해당 외국납부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의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수 없으면 해당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다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해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법인을 말한다.	② ----- -----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략)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② ----- ----- ----- -----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2.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76조의1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 ----- ----- ----- -----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② (생략)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 발생 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 ----- 조-----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자본 지급이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 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또는 제13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⑩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제15항 및 제16항-----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사본을 의미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제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